

제5절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어업권행사계약체결의 결의)

피고의 2012. 7. 27.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시 ○○동 ○○지선 수면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000,000㎡(어업면허 제1100호),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2,000,000㎡(어업면허 제1200호의 1/2)에 대하여 소외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기존 어업권행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과 제3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②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기관인 대의원회결의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광주고법 1993.12.3. 선고 93나912 판결)

☐ 결의무효확인 청구(어업권소멸 손실보상금분배결의)

피고가 2008. 4. 27. 및 2009. 12. 28.의 각 임시총회에서 한 전남 양식면허 제11144호 내지 11457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각 분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

어촌계가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을 통하여 총회소집 사항을 고지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는 전화나 인편으로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고, 자격이 있는 계원에게 의결권 없이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다.(해남지원 1993.12.23. 선고 92가합354 판결)

[참조판례] ①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률관계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소집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판례]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어촌계 정관 제33조 제1항 제7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㉔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도유사, 유사 인준결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20〇〇. 〇. 〇. 〇〇임씨 〇〇공파 종중(〇〇林氏 〇〇公派宗中) 대의원 대회에서 피고 임〇〇을 유사(이사)겸 도유사, 피고 임〇〇, 소외 임〇〇, 피고 임〇〇을 유사(이사)로 인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20〇〇. 〇. 〇. 〇〇임씨 〇〇공파 종중(〇〇林氏 〇〇公派宗中) 대의원 대회에서 피고 임〇〇을 유사(이사)겸 도유사, 피고 임〇〇, 소외 임〇〇, 피고 임〇〇을 유사(이사)로 인준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의원결의의 무효확인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종중의 도유사나 유사가 되었다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종중명
의의 재산을 불법처분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어서 이의 대의원
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을 확인받아 피고들이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소할
것이 아니요, 종중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만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

☐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시지부장의 지위 보유, 시지부장 선출결의 및 도지회장 인준취
소, 이사직위박탈결의 등)

1. 원고가 피고 산하 ○○북도지회장 및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산하 ○○시지부의 20○○. ○. ○.자 대의원총회에서 소의 장○○를 ○○시지부
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의 20○○. ○. ○.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북도
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이사회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총회결의만
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규약에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1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제3자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회장을 선출한 제1차 결의의 유효와 제2차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21357 판결)